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40776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407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5079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조용준, 서하윤

피고, 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5079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면 글상자 아래 4행의 “통지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8행 내지 제3면 아래에서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통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대로 주식인수금액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2만 주가 1만 주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감소되어 이 사건 주식 2만 주 중 1만 주만이 남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가 감경된 비율로 감경되거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점을 고려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성립

이 사건 계약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피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5.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주식양도 효력의 미발생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 참조).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진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2) B는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인수대금을 납입한 2014. 8. 4.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로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6. 5. 24.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피고에 대한 양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이하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도의무계약’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수령지체

1)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참조).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 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2만 주에 관한 양도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표시인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으로써 발생하고, ‘주식양도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주식양도계약’ 성립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2만 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B(대표이사 피고)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주면 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지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매수에 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 2만 주 양도 의사표시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2016. 5. 24. 이 사건 통지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2만 주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제공한 이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2만 주 양도라는 급부는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400조에 따라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한 2016. 5. 24.부터 피고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라.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5조 제2항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4.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양도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식 2만 주로 특정되었고, 피고의 수령지체 중이던 2018. 11. 9.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2만 주가 1만 주로 감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2만 주 중 1만 주를 피고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주식의 감소에 원고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불능이 된 이 사건 주식 중 1만 주의 주식매매대금 또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단독채무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인수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7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 중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창, 판사 김세중, 판사 김종우